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에너지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에너지를 “주요 에너지”로 정의하고,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17항·제18항 및 제3조제2항제3호).
-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에 있어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보증의무 면제 대상임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13조의2).

II. 검토의견

-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주서본 참조).

첫째, 용어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은 목적물등¹⁾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

는 에너지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에너지를 “주요 에너지”로 정의하고, 하도급대금 연동²⁾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그런데, 개정안 제2조제17항은 주요 에너지의 “비용”을 기준으로 정의한 반면, 개정안 제2조제18항에서는 주요 에너지를 인용하면서 “경비”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용어 사용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개정안 제2조제17항 정의에 따라 “비용”으로 통일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³⁾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조(정의) ① ~ ⑩ (생략)	제2조(정의)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이 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u>가격 또는 주요 에너지 경비가</u>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	⑪ ----- ----- ----- 비용이 ----- ----- -----

다)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⑪ 이 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 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참고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경비”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고 있어, 비용 중 **사업에 실제 소요된 금액**으로 한정하여 의미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 제2조제18항에서 “경비”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개정안 제2조제17항 정의에서 규정한 “비용”과의 용어 불일치로 인해, 현장에서 사용된 주요 에너지 비용이 경비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바, 정의에서 도출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 -----.
-----------------------------	-----------------

둘째, 부칙의 경과조치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연동에 주요 에너지를 추가하고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에 있어 면제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인데, 개정안 규정의 적용 대상인 “계약”과 관련해서, 부칙 제2조는 적용례를 통해 신규 체결 또는 갱신되는 계약, 부칙 제3조는 경과규정을 통해 이미 체결된 계약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결국, 2개의 부칙은 중복 규정이 되므로, 이 중에 1개 조항으로 보다 간결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개정안에 따른 적용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부칙 제2조 적용례를 남겨두는 대신, 부칙 제3조 경과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한편, 개정안이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면제 대상과 주요 에너지의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칙 제2조 조제목을 이에 맞게 수정하고, 본문에서는 개정안의 인용조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자구를 수정함.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부 칙	부 칙
제2조(<u>하도급계약 및 대금지급 보증의 적용례</u>) 제2조, 제3조 및	제2조(<u>하도급대금 연동과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 대금지급 보증</u>)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계약 및 대금지급 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계약은 제2조, 제3조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7항·제18항,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삭 제>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